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고 제2026-115호

세종특별자치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

「세종특별자치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」을 발의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6년 10월 30일

세 종 특 별 자 치 시 의 회 의 장

1. 조례명: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

2. 제안이유

○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사실관계, 법령 및 처분기준 적용의 적절성과 처분의 적정성을 검토·자문하는 행정처분배심제를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목적,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배심제 실시 및 대상, 신청 절차와 실시 여부 결정(안 제3조 및 제4조)

다. 배심원 후보자 명단의 작성·관리 및 배심원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및 제6조)

라. 배심원의 제척·기피·회피(안 제7조)

마. 배심원의 선정 요청 및 통지, 처분당사자의 의견 진술(안 제8조 및 제9조)

바. 배심원단의 회의 및 회의 결과의 반영(안 제10조 및 제11조)

사. 비밀유지의무, 수당 및 여비(안 제12조 및 제13조)

4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한 : 2026년 11월 4일

나. 제출사항

-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・반 여부 및 그 사유)
-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제출처 :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

- 주소 : (30151)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
- FAX : (044) 300-7219 / E-mail : zian1121@korea.kr

라. 문의처 : (044) 300-7313

붙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 1부.

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

세종특별자치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행정의 공정성·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처분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처분배심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행정청”이란 「행정절차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청을 말한다.
2. “행정처분”이란 「행정절차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.
3. “처분당사자”란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를 말한다.

제3조(배심제의 실시 및 대상) ① 세종특별자치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처분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행정처분배심원단의 자문을 받는 행정처분배심제(이하 “배심제”라 한다)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배심제의 대상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 사무에 관한 행정처분으로서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에 따라 사전통지를 해야 하는 행정처분으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1. 처분당사자가 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않은

경우

2. 「행정절차법」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문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 경우

3. 행정처분의 여부와 정도에 관하여 행정청에 재량이 없는 경우

4. 행정처분을 지연시킬 목적 등 배심제를 남용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

제4조(배심제의 신청) ① 행정청은 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배심제에 대해 처분당사자에게 안내해야 한다.

② 배심제를 신청하려는 처분당사자는 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까지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과 별지 서식의 행정처분배심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배심제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. 다만, 관계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거나 사실관계의 확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.

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결정한 배심제 실시 여부를 처분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.

제5조(배심원 후보자 명단) ① 시장은 배심제의 효율적·안정적 운영을 위해 50명 이내의 배심원 후보자 명단을 작성·관리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후보자 명단을 작성·관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.

1. 교수, 변호사, 세무사, 기술사 또는 건축사 등 행정처분과 관련된 분야의 자격과 실무 경력을 갖춘 전문가

2. 행정처분과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퇴직 공무원

3. 그 밖에 시장이 행정처분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후보자 명단을 매년 정비해야 한다.

제6조(배심원단의 구성) ① 시장은 배심제 대상 행정처분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처분배심원단(이하 “배심원단”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

② 배심원단은 제5조에 따른 후보자 명단에 포함된 사람 중에서 배심원단의 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배심원을 시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.

③ 배심원단의 장은 배심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

④ 배심원단의 장은 해당 배심원단을 대표하고, 배심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⑤ 제2항에 따라 위촉된 배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1. 배심원단의 회의(이하 “회의”라 한다)를 마친 경우

2. 제7조에 따라 제척, 기피 또는 회피하게 된 경우

제7조(배심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배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심원단의 회의에서 제척(除斥)된다.

1. 배심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처분당사자이거나 그 처분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
2. 배심원이 처분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3. 배심원이 행정처분에 대해 증언, 진술, 자문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
4. 배심원이나 배심원이 속한 법인이 처분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② 처분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배심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배심원단에 기피(忌避) 신청을 할 수 있고, 배심원단의 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배심원은 그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배심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배심원단의 회의에서 회피(回避)해야 한다.

제8조(배심원의 선정 요청 및 통지 등)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배심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면 행정처분을 하려는 부서(이하 “처분부서”라 한다)의 장은 배심제를 총괄하는 부서(이하 “총괄부서”라 한다)의 장에게 배심원단을 구성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배심원으로 위촉할 사람을 선정하고, 그 명단을 처분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.

③ 처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·장소 및 회의 안건 등을 각 배심원에게 통지해야

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배심원은 처분부서의 장에게 회의에 필요한 의견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⑤ 총괄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제척, 기피 또는 회피한 배심원이 있어 제6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 배심원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배심원을 추가로 선정해야 한다.

제9조(처분당사자의 의견 진술) ① 배심원단은 처분당사자가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다만, 처분당사자가 진술을 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을 바탕으로 검토할 수 있다.

② 처분당사자는 대리인과 함께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10조(배심원단의 회의) ① 배심원단은 상정된 행정처분별로 처분부서의 장과 처분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사실관계에 대한 관계 법령 및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이 적절한지, 행정처분의 정도가 적정한지 등을 검토한다.

② 배심원단은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.

③ 배심원단의 회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배심원 과반수의 출

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 출석한 배심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④ 배심원단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회의 결과와 그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처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⑤ 처분부서의 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4항에 따른 회의 결과 및 그 이유와 함께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제11조(회의 결과의 반영) ① 행정청은 행정처분을 할 때 제10조제4항에 따른 배심원단의 회의 결과와 그 이유를 존중해야 한다. 다만, 행정청은 회의 결과에 구속되지 않는다.

② 행정청은 처분당사자에게 행정처분을 통지할 때 배심원단의 회의 결과와 반영 여부를 함께 알려야 한다.

제12조(비밀유지의무) 배심원 및 관계 전문가는 배심원단의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.

제13조(수당 및 여비) 시장은 배심원단의 회의에 참여한 배심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 [별지 서식]

행정처분배심제 신청서

※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7일

신청인 (처분당사자)	성명(법인명)	
	주소	전화번호
신청 사유	① 예정된 행정처분의 제목	
	② 신청사유	

「세종특별자치시 행정처분배심제 운영 조례」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처분배심제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

첨부서류	입증가능한 자료 첨부(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)	수수료 없 음

유 의 사 항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위 배심제 신청의 대상이 된 사전통지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행정처분배심원단의 회의 결과는 권고적 성격으로서, 행정처분은 회의 결과에 구속되지 않습니다.

처 리 절 차

신청서 작성	→	접 수	→	검 토	→	회 의	→	의견 결정
신청인		처 리 기 관 (행정청)		처 리 기 관 (행정청)		행정처분배심원단 (행정청)		행정처분배심원단 (행정청)

210㎜×297㎜(백상지 80g/㎡)